제규정관리규칙

제정 2009. 7. 27. 개정 2022. 5. 2.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제규정관리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제규정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규칙에 의한다.
- 제3조(제규정의 구성) 제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구성한다.
 - 1. 명칭
 - 2. 목차
 - 3. 본칙
 - 4. 부칙
- 제4조(명칭) 제규정에는 규정, 규칙, 지침의 자구를 사용하여 당해 제규정의 내용을 적절, 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.
- 제5조(목차) 제규정에는 조항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목차를 둔다. 다만, 조문이 간단한 경우에는 목차를 생략한다.
- 제6조(본칙) ①제규정의 본칙은 총칙조문, 본칙조문, 부속조문으로 구성한다.
 - ②총칙조문은 목적, 적용범위, 용어의 정의, 기본적인 사항 및 해석의 지침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.
 - ③본칙조문은 제규정의 본체를 이루는 부문으로서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내용으로 한다.
 - ④부속조문은 적용상의 특례, 벌칙, 기타 보칙 등으로 한다.
- 제7조(부칙) 부칙조문은 시행일, 경과조치, 기존 제규정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

- 제8조(별표·별지) 규정의 내용에 포함할 수 없거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표 형식으로 별표를,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서식형식의 별지를 사용 할 수 있다.
- 제9조(구분) ①규정의 조문수 및 체제에 따라 장 또는 절을 설정하여 구분한다. 다만, 규정의 내용이 간단할 경우에는 장,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②장, 절, 조에는 각기 일련번호를 붙이며, 그 규정의 내용을 간략명료하게 표현한 제명을 기재하여 구분한다.
 - ③조문의 내용 중 동일한 내용 또는 상이한 내용으로서 흐름의 순서가 있는 경우에는 항 및 호로서 세분하여 구분한다.
 - ④부칙은 1개 조문일 때에는 일련번호 없이 내용만 기재하고, 2개 조문까지는 ①, ②로 구분하며 부칙이 2개항을 초과할 때에는 조로 구분한다.
 - ⑤별표나 별지가 2개 이상인 때에는 별표나 별지의 글자 다음에 일련번호를 붙여 구분한다.
- **제10조(서식)** 규정의 전문(全文)은 가로쓰기로 하되 표현은 간명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다.
- 제11조(문자, 숫자) ①규정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"한자" 또는 "외래어", "원 어"를 사용할 수 있다. ②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2조(조, 항, 호의 추가) ①기존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새로운 조, 항, 호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"제0조의 0"과 같이 표시하여 기존의 조, 항, 호의 사이에 추가하고 기존의 조, 항, 호의 번호변경을 피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제1항과 같이 조, 항, 호를 추가하였을 때에는 조문말미에 "신설"의 자구와 신설 연 월일을 괄호 안에 표시한다.
- 제13조(조, 항, 호의 삭제) 기존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중간의 조, 항, 호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조, 항, 호만 남기고, 삭제하되 "제0조 삭제"라 표시하고 말미에 삭제 연월일을 괄호 안에 표시한다.
- 제14조(개정 연월일의 표시)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을 때에는 개정된 조, 항, 호의 말미에 "개정"의 자구와 개정 연월일을 괄호안에 표시한다.

- 제15조(다른 규정의 인용) 하나의 규정이 다른 규정을 인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.
 - 1. 다른 규정의 조문을 인용하는 때에는 인용 규정의 명칭과 조문번호를 명시한다.
 - 2. 같은 규정내에서 다른 조문을 인용하는 때에는 인용 조문번호를 명시한다.
 - 3. 같은 규정내에서 항 또는 호를 인용하는 때에는 인용 항 또는 호의 번호를 명시한다.
- 제16조(규정의 제정 및 개폐형식) 규정을 기안하여 제정권자의 결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 - 1. 규정명칭(안)(개정시는 "개정안", 폐지시는 "폐지안")
 - 2. 제안사유
 - 3. 주요골자
 - 4. 제정(개정) 내용
 - 5. 신·구조문 대비표
- 제17조(규정의 배포) 제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지체없이 전자게시 판에 이를 게시한다.
- 제18조(규정집의 정비·관리) 주관부서장은 규정집을 체계적으로 유인·편집한 후 소속 직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비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열람, 대여 등의 제한) ①제규정은 진흥원 외로 열람, 대여 또는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②기밀을 유지하여야 할 제규정은 별철하여 보관하고 그 배부는 주관부서장이 제한 배포할 수 있다.
- 제20조(규정관리심의회) ①제규정의 제·개정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규정관리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.
- 제21조(심의사항)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규정,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. 다만, 규칙의 별지에 의한 서식 개정의 경우는 제외하다.
 - 2.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- 3. 규정 적용상의 문제발생이나 해석이 곤란한 경우의 규정유권해석

- 4. 기타 규정관리에 있어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변경하고자 하는 제규정과 관련된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검토가 우선되며 규정관리심의회는 문구나 다른 규정과의 모순 여부 검토만 수행한다.
- 제22조(위원장 및 간사)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 - ②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심의회의 제반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기록정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.
- **제23조(회의소집 등)** ①간사는 위원장의 결재로 안건을 확정한 후 심의회를 소집한다. <개정 2022.5.2.>
 - ②위원장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[별지 제1호]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 -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 - ④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제24조(회의결과의 통보) 간사는 심의된 사항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는 즉시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한다. <개정 2022.5.2.>
- 제24조의2(회의결과의 반영) 소관부서장은 제24조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제 규정안을 간사에게 제출한다. <신설 2022.5.2.>
- 제25조(기밀유지) 심의회에 관여한 자는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중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부 칙<2009. 7. 27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 5. 2.>

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서 면 결 의 표

20 - 차 규정관리심의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.

의안번호	제 목	결 찬성	의 반대	의견
			,	

		녆	월	രി	
		건	펼	걸	
				6)	ە)

한국인터넷진흥원 규정관리심의회 위원

위 원